

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

의안 번호	9
----------	---

발의연월일 : 2000. 3. 10.

발 의 자 : 최정경의원의외 4인

1. 폐지이유

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과 중복됨
으로 이를 폐지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을 폐지함.

사천시의회 규정 제 호

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

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